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9일

동탄4동장 인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윤	이 *윤 1977-08-07	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1길 (청계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0-12